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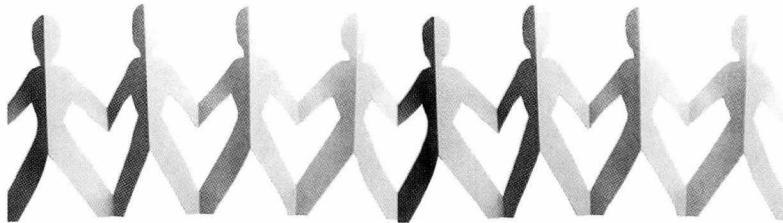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관한 논고

Telecom Korea / 정경미 기자

무선인터넷의 세계가 활짝 열린다. 늦어도 이달 중 무선망이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SK텔레콤이 신청한 '무선인터넷

망 게이트웨이(GW) 이용약관'을 인가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다른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포탈·컨텐츠제공 사업자에게 전면 개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컨텐츠 및 포털사업자들의 참여가 본격화되어 무선인터넷



넷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업자마다 현 무선 플랫폼 표준이 다르다는 것과 관련 단말기 개발 문제 등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 단기간 내 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무선인터넷망이 개방되면 지난 해 1조 2천억원이던 시장규모가 내년에는 4조 7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망 개방으로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되고 이용자가 늘면 정보이용료가 내년에는 1조4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망 개방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 인터넷에 사이트를 자유롭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유선과 마찬가지로 무선인터넷 사업을 원하는 컨텐츠사업자라면 조건 없이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미 망을 개방,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간 상태다.

KTF는 지난달 초 기자 설명회를 통해 작년부터 무선망을 개방했으나 시험단계에 불과했다. 빌링시스템 등 기본적인 체계가 마련된 올해가 본격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망개방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컨텐츠사업자의 과금을 대행하는 것으로, 로그 분석뿐 아니라 통합 과금까지 가능해야 한다며 정보기술원과 플랫폼 개발원을 주축으로 작년부터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도 마찬가지. LG텔레콤측은 "작년 8월부터 망개방과 동일하게 유선포털업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무선제작툴을 배포, 누구든지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유선망과 달리 무선은 사업자들이 자사 고

객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판단, 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가입자의 포털, CP선택권이 제한되고 CP사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서다.

이를 위해 국가 표준 무선플랫폼으로 개발 중인 '위피'를 기본 플랫폼으로 채택, 사업자간 인터넷 서버 연동은 물론 사업자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컨텐츠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망을 개방하고자 했다.

무선망 개방은 크게 볼 때 IWF와 WAP 게이트웨이 개방으로 나눠진다.

IWF, 즉 무선데이터망의 개방은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빗장을 열어놓은 상태. 별도의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통 사업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빌링/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KT가 빌링 및 인증 대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ASP'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통 사업자들과 IWF 연동 테스트를 완료했다. 시장 초기이다 보니, 아직까지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외에 여타 사업자들은 컨텐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 조만간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바로 게이트웨이, 즉 이번에 이뤄진 개방 조처다. 기업이나 개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된다는 점에서다.

이번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 개방에 따라 포탈·컨텐츠 사업자는 망 사업자에게 무선인터넷망 접속 희망일 한 달

전에 개방을 요청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기술적 문제점이 없으면 접속 희망일 이전까지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포탈·콘텐츠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하려면 사업자가 지정하는 콘텐츠협회 등의 콘텐츠 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가 해로운지 검증받아야 한다.

요금문제와 관련해서는 포탈·콘텐츠사업자가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대행을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정보이용료의 5~10% 수준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요금이 잘못 부과되는 등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지정하는 제3의 과금 검증기관으로부터 징수 청구하는 정보이용료를 검증받아야 한다.

관련업계는 “현재 무선인터넷이 이통 사업자들의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약 10% 정도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무선망 개방으로 유선에서 유명세를 누리던 대형 포털업체를 비롯해 콘텐츠 업체들이 무선

인터넷으로 속속 입주할 것으로 보여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 마디로 무선망 개방이 무선인터넷 시장을 확대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선망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바뀌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초기 시장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섰으



나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업체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보다는 전문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무선도 유선인터넷 시장과 마찬가지로 작은 업체들이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서게 될 것”이라며 “콘텐츠업체의 노하우가 발휘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상황의 변화에 맞춰 기존과 다른 비즈니스 모델, 신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무엇보다 사업자간 플랫폼 표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선망이 개방되면 트래픽이 증가, 사업자로서도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기간 성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단말기의 개발 및 보급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적되는 점.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숫자 URL 판매로 접수된 무선사이트 수는 2천개를 육박하지만 시장 활성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실례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해 5월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단말기 제조업체와 콘텐츠사업자가 중복투자로 드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이통 3사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화(위피(WIFI) ;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를 추진했다.

현재 위피는 이동통신 3사가 새로 출시하는 단말기부터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이

정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통신위원회를 통해 접속이용 협조여부, 플랫폼 등 규격정보 제공여부, 과금·징수대행 여부 등을 조사해 무선인터넷망 개방 실효성을 꾸준히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유해콘텐츠의 유통과 정보이용료의 고의적인 과다 청구, 무료콘텐츠 제공에 따른 시장교란 행위 등도 이통 3사, 관련협회 등과 함께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용지들이 다른 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컨텐츠와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털·콘텐츠사업자는 컨텐츠·서비스 제작과 배포에 필수적인 무선인터넷 플랫폼 정보(WAP GW, 빌링시스템, 연동구격 등)를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컨텐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 단말기 규격 정보(컬러 단말기, 4·16·64 폴리 단말기 등) 역시 이용자 동의를 얻어 사업자의 단말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컨텐츠의 경우 사업자의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했지만 무선망이 개방되면 아무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의 품질여부를 누가 컨트롤 할 것이며 만약의 사태로 가입자가 피해를 볼 경우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등 정책적인 부분도 크게 고려됐던 사항이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라 생기는 서비스 이용 민원은 포털·콘텐츠사업자와 이통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되, 책임있는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선인터넷망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통신위원회를 통해 접속이용 협조여부, 플랫폼 등 규격정보 제공여부, 과금·징수대행 여부 등을 조사해 무선인터넷망 개방 실효성을 꾸준히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유해콘텐츠의 유통과 정보이용료의 고의적인 과다 청구, 무료콘텐츠 제공에 따른 시장교란 행위 등도 이통 3사, 관련협회 등과 함께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해콘텐츠 검증기관, 제3의 과금 검증기관 등을 일찍이 선정해 유해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정보이용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 등을 예방하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포털이나 컨텐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무선인터넷망 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포털 및 컨텐츠 제공업체의 무선인터넷 시장 본격 입성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관련 전략 수정도 불가피한 상태.

물론 기존 컨텐츠 개발 노하우가 있고, 이미 쓸만한 컨텐츠는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이지만, 자칫하다간 트래픽 증가는 커녕 그나마 짭짤하게 챙기던 수익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현재 사업자들은 컨텐츠 보다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 무게감을 싣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각 사업자가 자체 운영중인 포털 사이트를 리포지셔닝할 방침이다. 대형 포털 업체들의 경우 유선에서 확보한 강점 중 한두 개만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등 전문 채널 중심의 서비스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 이와 차별화된 포털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컨텐츠는 전문 컨텐츠업체에게 맡기는 대신 사업자들은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LBS, 발신음 소리 등 플랫폼 투자가 비교적 크거나 멀티메일 등 단말기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